

출판부 규정

제1조 (목적)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의 출판과 연구 성과를 높이 드러내는 학술도서를 간행하여 학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2조 (사업) 출판부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교양교재 출판 및 그 판매
2. 학술지 및 학술도서의 출판 및 그 판매
3. 학교간행물의 출판 및 그 보급
4. 부속 및 부설기관 간행물의 출판대행 및 그 판매
5. 위탁 및 기타 출판 및 판매업무에 관계되는 사업

제3조 (위원회) ① 출판부는 심의기관으로서의 출판위원회를 둔다.

- ② 출판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위원은 7명을 넘지 못한다.
- ③ 출판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④ 출판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출판부 운영의 기본 방침
 2. 출판부 예산 및 결산 심의
 3. 출판도서의 선정 및 기획
 4. 출판부 부대사업의 심의

제4조 (직제) 출판부의 직제는 서울신학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른다.

제5조 (출판 및 심사규정)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의 간행물은 출판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출판부장) 출판부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출판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7조 (부장직무) 출판부장은 출판부의 직원을 통솔하며,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출판위원회 의결 사항의 집행
2. 출판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출판물의 편집 간행 및 출판 대행에 따르는 업무
4. 출판도서의 보관 및 판매에 따르는 업무
5. 예산 및 결산의 작성
6. 수입지출에 따르는 경리에 관한 사무
7. 기타 출판사업에 부대되는 사무

제8조 (운영자금) 출판부의 기금과 서울신학대학교의 출판부 운영 보조금 및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 (급료) 출판부는 직원 또는 용원을 채용하되, 출판부의 예산으로 그 급료를 지급한다.

제10조 (회계) ① 출판부의 회계 연도는 서울신학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출판부의 예산은 출판부장이 작성하여 2월 안으로 출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③ 출판부의 결산은 서울신학대학교 총무처의 결산방식에 따라 출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1조 (장부) 출판부에는 출판물 대장, 경리장부, 재고 판매장부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총장 또는 총장이 지명한 자 및 출판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발행 및 인쇄) 본 출판부의 발행인은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으로 하고 인쇄 출판 및 배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출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시행세칙) 본 규정에 따른 시행세칙은 출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보 칙

제14조 (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출판부장의 제청으로 출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시행) 본 규정은 출판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1998년 11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